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315
------	-----

2022. 12. 20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17일, 이숙자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】

-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 12. 20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수정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숙자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일정 지역내에 집적도가 높은 산업과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- 그러나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진흥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사실상 지구가 미운영 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.
- 따라서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절차 등을 개선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”의 정의에 대해 정비함(안 제2조제4호).
- 나. “권장업종”의 정의를 정비함(안 제2조제7호).
- 다.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함(안 제11조제6항).
- 라. 진흥지구의 변경 시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(안 제11조제7항 신설).
- 마. 진흥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함께 하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제1항).
- 바. 진흥계획 제출 기한에 대해 규정함(안 제12조제3항).
- 사.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해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(안 제12조제1항제1호).
- 아. 진흥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(안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)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진흥지구 지정 신청과 진흥계획 수립,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·취소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개선하고, 관계법령 개정¹⁾에 맞춰 조례에 인용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발의됨.

나.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국토계획법”)에서는 주거·상업·공업·유통물류·관광·휴양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를 서울특별시장이 ‘개발진흥지구’로 지정·관리하도록 하고 있음(제37조제1항제7호).
- 같은 법 시행령은 ‘개발진흥지구’를 주거, 산업·유통, 관광·휴양, 복합,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화하고 있음(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).

- 이에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를

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용도지구 체계 정비에 따라 개발진흥지구(9호→7호)의 조문 변경(2017.4.)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 중 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삭제되고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로 통·폐합되면서 ‘산업개발진흥지구’는 ‘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’로, ‘공업기능’은 ‘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’으로 개정됨(2012.4.).

제정해 집적도가 높거나 권장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‘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²⁾’와 ‘특정개발진흥지구³⁾’로 우선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.

-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는 현재 종로 귀금속 지구를 포함해 8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, 진흥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내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.

<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 >

연번	유형	지구명	위 치	면적(㎡)	대상지 선정일	지정일	진흥계획	지구단위 계획	비고
1	특정	종로 귀금속	묘동 53번지 일대	140,855	'09.4.24.	'10.1.28.	'13.01.03.	'16.07.21	
2	산업	성수 IT	성수동2가 일대	539,406	'09.4.24.	'10.1.28.	'13.01.03.	'21.10.14	
3	특정	마포 디자인출판	서교동 395번지 일대	746,994	'09.4.24.	'10.1.28.	'13.01.03.	'16.04.28	
4	"	동대문 한방	용두동, 제기동 일대	211,355	'10.6.3.	'13.7.26.	'15.06.11.	수립 중 ('24년 예정)	
5	"	면목 패션	면목동 136번지 일대	292,000	'10.6.3.	'16.4.28.	'17.07.24.	'22.1.26.	
6	"	중구 인쇄	충무로 4, 5가 일대	303,240	'10.6.3.	'17.7.13.	수립 중 ('23년 예정)	-	
7	"	여의도 금융	여의도동 22번지 일대	387,469	'09.4.24	'10.1.28.	수립 중 ('22년 예정)	-	
8	"	중구 금융	삼각동 50-1번지 일대	281,330	'09.4.24	'10.1.28.	수립 중	-	

○ 지정현황 : 8개 지구(5개 진흥계획 수립·고시, 3개 진흥계획 수립 중)

* 대상지 선정후 미추진(3개소) : 중구 디자인·패션('10.6월), 마포 웨딩('10.6월), 강남 디자인('10.6월)

** 신규 대상지 선정(1개소) : 양재 ICT('21.12월)

2)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: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3) 특정개발진흥지구 : 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

다. 진흥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절차 개선(안 제12조제1항·제3항)

- 안 제12조제1항은 구청장이 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에 진흥계획을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에 함께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같은 조 제3항은 진흥계획 제출 시기를 “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”에서 “지정대상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”로 단축하고 있음.

<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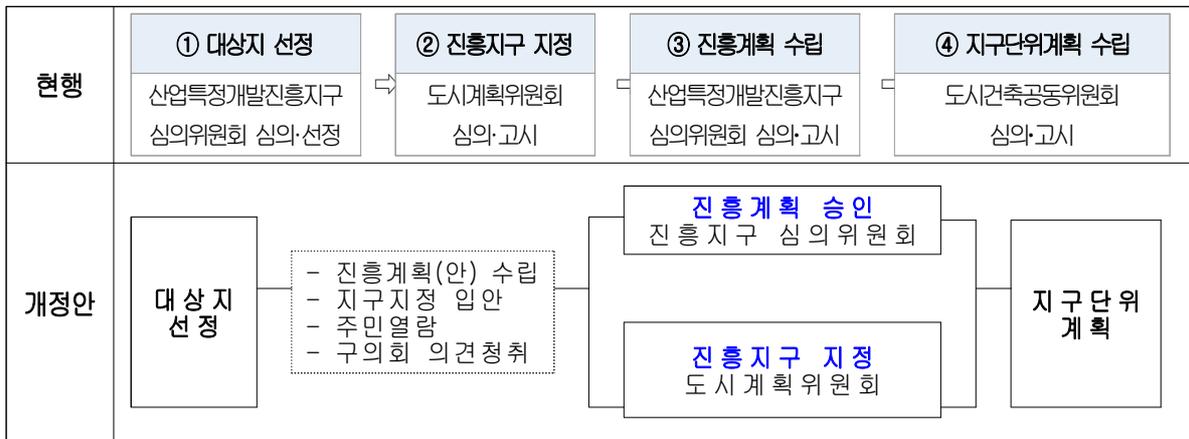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<u>수립하여야</u>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<u>시장의 승인을 받아야</u> 한다.</p>	<p>제12조(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<u>수립하여</u> <u>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</u> 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지정대상지 선정일</u> ----- <u>제출하여야</u> --.</p>

- 현재는 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진흥지구 지정 심의 단계에서 계획 미비, 검토자료 부족

등의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는 등 진흥지구 지정을 거쳐 진흥계획 수립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.

- 개정안과 같이 진흥계획을 지구 지정과 동시에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 시 효율적 심의가 가능하고 대상지 선정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폭 단축(평균 8년→4년)되는 효과가 있음.

< 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절차 >



- 이럴 경우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(ICT) 거점 대상지로 새로 선정된 양재(2021.12.) 등의 지구 지정과 진흥계획이 조기에 마무리 됨으로써 서울시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됨.
- 다만, 진흥지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(시세 감면) 마련과 자치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.

라. 업종변경 유연화, 부진지구 취소 등 제도 정비(안 제2조제7호, 제11조 제6항, 제14조제1항)

- 안 제2조제7호는 권장업종의 정의를 “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”에서 “진흥계획 수립 시 고시한 업종”으로 변경함.
 - 이는 대상지 선정이후 진흥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경제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권장업종을 유연하게 변경함으로써 진흥지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임.
 - 안 제11조제6항 후단은 “선정된 지정대상지의 변경 또는 취소” 절차를 신설하고, 안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이를 추가함.
- 진흥지구 변경사항은 안 제11조제7항 및 안 제14조제1항제2호로 이동하여 신설함.

<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~ ⑤ (생략)	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대 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	⑥ ----- ----- -----

- 다만, 위원회 심의사항인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, 이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⁵⁾과 중복돼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위원회 심의가 선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.

마. 인용 법률의 현행화(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)

-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조례에 인용된 “법 제37조제1항제9호” 조항이 “법 제37조제1항제7호” 로 변경(2017.4.)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,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조문(산업→산업·유통, 공업→공업·유통·물류)을 변경함.
- 조례 인용 법률의 현행화는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법률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임.
- 다만, 용도지구 체계 정비를 위해 국토계획법이 2017년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바, 향후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도록 주의가 요구됨.

5) 법 제37조(용도지구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
법 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또한, 개정안은 일부 조문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의 변경이 누락된 바 이를 반영해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< 수정의견 >

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산업개발진흥지구 및</u> <u>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</u></p> <p>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산업개발진</u> <u>흥지구</u>는 <u>공업기능</u> 중심의 권장업종 을 유치·육성하고, <u>특정개발진흥지</u> <u>구</u>는 <u>비공업기능</u>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 성화를 도모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<u>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</u> <u>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</u></p> <p>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산업·유통</u> <u>개발진흥지구</u>는 <u>공업기능</u> 및 <u>유통·</u> <u>물류기능</u> ----- ---- <u>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</u> <u>류기능</u> 및 <u>관광·휴양기능</u> 외의 기능 -----.</p> <p>③ ~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1. 수정이유

- 일부 조문의 용어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바 이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로, 공업기능은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 등으로 용어를 수정함(안 제3장의 제목, 안 제11조제2항).

Ⅵ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5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20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일부 조문의 용어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바 이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로, 공업기능은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 등으로 용어를 수정함(안 제3장의 제목, 안 제11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장의 제목 “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 을
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” 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
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” 으로, “비공업기능” 을 “주거기능,
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” 으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</u></p> <p>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</u>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하고, 특정개발진흥지구는 <u>비공업기능</u>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</u></p> <p>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<u>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</u>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하고, 특정개발진흥지구는 <u>비공업기능</u>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장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</u></p> <p>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</u> ----- ----- <u>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37조제1항제9호” 를 “제37조제1항제7호” 로, “공업기능” 을 “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37조제1항제9호” 를 “제37조제1항제7호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산업개발진흥계획” 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계획” 으로 “산업개발진흥지구” 를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진흥지구 지정” 을 “진흥계획 수립” 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 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” 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” 으로, “비공업기능” 을 “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6항 후단 중 “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” 을 “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

또는 취소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 를 “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정일” 을 “지정대상지 선정일” 로, 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” 를 “제출하여야” 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” 을 “지정대상지의 선정·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하고,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"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"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7조 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<u>공업기능을</u> 중심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.</p> <p>5. "특정개발진흥지구"란 법 제37조 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라 주거기능, <u>공업기능</u>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.</p> <p>6. "<u>산업개발진흥계획</u> 및 특정개발진흥계획"(이하 "진흥계획"이라 한다)이란 <u>산업개발진흥지구</u> 및 특정개발진흥지구(이하 "진흥지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제37조</u> <u>제1항제7호</u> 및 ----- ----- <u>공업</u> <u>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</u>----- -----.</p> <p>5. ----- <u>제37조</u> <u>제1항제7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<u>산업·유통개발진흥계획</u> ----- ----- ----- <u>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</u> -----</p>

구”라 한다)를 지정목적에 맞도록
육성·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
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
말한다.

7. “권장업종”이란 입지상 비교우위
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
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
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여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
을 말한다.

8. ~ 13. (생략)

제3장 산업개발진흥지구 및
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
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

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
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
업종을 유치·육성하고, 특정개발
진흥 지구는 비공업기능 중심의 권
장업종을 유치·육성함으로써 지
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
에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
정대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

-----.

7. -----

-- 진흥계획 수립 -----
-----.

8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3장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
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
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산업·유통개
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
물류기능 -----
- 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
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
기능 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⑦ <신 설>

제12조(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조(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

----- . 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 ----- .

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(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-----

----- 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지정대상지 선정일----- 제출하여야 --.

제14조(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

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생략)

1.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 및
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

<신설>

2. ~ 4. (생략)

② ~ ⑧ (생략)

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1. ----- 지정대상지의 선정·변경
및 취소에 관한 사항

2.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
사항

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
와 같음)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